

2025년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 추진계획

1 추진근거

- 응급의료법 제34조의2(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)
- 「2025년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(달빛어린이병원) 운영지침」(보건복지부, '25.1.20.)

2 추진계획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

-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·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
- 소아 야간·휴일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,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

○ 사업내용 :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평일 야간 및 휴일 운영하는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

○ 현황 : 30개소('25.1월) ※ ('23)17개소 → ('24)29개소

○ 예산액 : 2,772,0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 ※ 본예산 기준

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수가 가산,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○ 지원기준 : 운영시간 충족(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)

- (전일운영) 주 7일 운영 41시간 이상
- (일부요일 운영)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소재시 15시간 이상

※ (운영비 가산) 소아진료 활성화지역* 1.5배, 소아진료 관심지역** 2배

*만18세이하 인구 3만명 미만 시·군 / **소아진료 활성화지역 중 응급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 시·군

□ 운영관리 및 홍보

- 운영점검 및 실적관리 : 2회(상·하반기)
 - (현장점검) 2회 실시하되 연 1회 이상 불시점검 실시(시·군)
 - ※ 점검내용 : 운영시간 이행여부, 적정인력 운영여부, 야간진료(조제)관리료 적정 청구여부
 - (실적관리) 통합응급의료정보인트라넷 실적 입력(의료기관)
 - (현황관리)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현황 관리대장 작성(道,시·군)
- 홍보추진 : 연중
 - 응급의료정보센터(e-gen) 홈페이지 현황관리
 - 경기도 홈페이지,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SNS 홍보
 - 소아환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(e알리미 등) 홍보
 - 보도자료 등 경기도 소아 야간·휴일 진료체계 개선 추진 홍보

□ 기타 행정사항

- 참여기관 계획변경, 일시중단, 휴진시 사전 요청 및 시·도 승인
- 부정운영, 무단휴진 등 발생시 시정명령, 지정취소

3 지정계획

□ 추진방향

- 지정기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시모집이 아닌 심사일정에 따른 공모 실시
-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범운영시간(평일 24시) 운영 독려 및 미지정 시·군 참여 독려

□ 지정개요

- 지정절차 : 공모(시·군)→신청(의료기관)→심사(시·군)→결정 및 지정, 지정서 발급(道)
- 지정개소 : 시·군·구(행정구 구분)별 1개소(또는 그룹) 지정원칙
 - 만 18세 이하 인구 5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에는 1개소 추가 지정 및 매 5만명마다 1개소 추가 지정 가능
 - 위 규정에도 소아환자 수, 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

필요시*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(운영비 지원금 감액 가능)

*기 설치 기관만으로 소아환자를 원활히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, 인근 시·군으로부터 유입되는 소아환자가 많은 경우 등 추가 지정 필요한 경우 등

○ 운영기준 : 지정된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 준수

운영시간	평 일	토·일·공휴일(명절 포함)
최소운영시간	18시 ~ 23시	10시 ~ 18시
모범운영시간	18시 ~ 24시	09시 ~ 22시

○ 운영형태

형태	일반운영	일부요일	연합운영
방식	주7일	평일 한정시 주3일 이상, 토요일 또는 일요일 포함시 주2일 이상	당번제 여러 병·의원 주7일 운영 (인접 시·도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간 협의 통해 연합 가능)

○ 지정기준 : 소아환자 진료역량, 의료진 확보, 사업계획서 등 평가

- 선정지표에 따른 심사(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지정불가)
- 선정지표

항목	주요내용	배점
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(50점)	진료의사 전문과목	15점
	소아환자 비율 및 소아환자 진료건수	20점
	기존 야간 및 휴일진료 경험 및 역량	15점
	시설 및 장비, 응급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여부	가점
사업계획의 적절성(40점)	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제공시간(주당 운영시간) 및 인력투입 현실가능성	10점
	야간 및 휴일 상주인력 규모	20점
	사업효과성 및 지역내 기여도	10점
기타(10점)	종사자 사업수행 의지 등	10점
총 점		100점

□ 재지정 개요

○ 지정절차

- (기한종료) 지정종료 2개월 전 관내 의료기관 대상 지정종료(예정)에 따른 공모(시·군) → 신청(의료기관) → 심사(시·군) → 결정 및 재지정(道)
- ※ 현재 참여기관 기한종료에도 다른 참여 희망기관이 없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재지정 가능
- (대표자 변경) 참여기관(병·의원, 협력약국)의 대표자 변경으로 요양기관기호 변경 있는 경우 시·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지정 가능
- ※ 지정기간의 남은기간 승계하고 지정서 발급해야함

□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 발급

- 추진근거 :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)
 - ※ 2024. 8월 시행으로 최초 발급
- 발급대상 :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(달빛어린이병원)
 - 지정서 발급번호 : 최초 지정연도 - 순번 ※ 예시 : 제2017-1호
 - 재지정시 발급번호 변동없이 발급일자만 변경

4 | 추진일정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'26. 1월
계획수립	운영지침 확정	계획 수립											
수요조사			공모		공모						공모		
지정				1차		2차	공모*	3차* (2차)				4차	
재지정	심사	1차											
현장점검	상반기 1회					결과 제출	하반기 1회					결과 제출	
실적입력													
홍보													

- * '25.9.24. 지정기한 도래(5개소)에 따른 재지정 및 신규지정 병행 추진
- ※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기준일 : 1.1. / 7.1.
- ※ 지정 일정 변동 가능

5 | 향후계획

- '25년 추진계획 시·군 안내 및 신규지정 심사결과 제출 요청

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3서식] <신설 2024. 7. 31.>

제 호

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

- 기관명:
- 대표자:
- 소재지:
- 지정기간:

위 기관을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직인